

202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안사유

- '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의 확정통보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결과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재원의 현행유지와 함께 본 예산 세출사업 중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공사의 설계지연으로 금번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감액함.

또한, 한강교량 투신사고 발생 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되는 한강안전시스템의 개선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잠실·영동대교의 CCTV 등 영상감시장비 교체에 필요한 추가 소요 재원과

시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보장을 위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기 편성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한 부족재원의 증액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미확정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노후 선박 교체사업의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서울시 부담예산의 조정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024,637	1,009,650	14,987	1.5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1,024,637	1,009,650	14,987	1.5

나. 세출예산(총계)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2,002,363	1,980,141	22,222	1.1
일반회계	977,726	970,491	7,235	0.7
특별회계	1,024,637	1,009,650	14,987	1.5

2.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

- 1) 일반회계: 해당 없음
- 2) 소방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024,637	1,009,650	14,987	1.5
세외수입	2,474	2,474	-	-
국고보조금등	3,439	3,439	-	-
보전수입등	33,198	30,646	2,552	8.3
특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00	2,600	-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5,200	-	5,200	-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977,726	970,491	7,235	0.7
기타회계전입금	977,726	970,491	7,235	0.7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333,795	333,795	-	-
소방안전교부세 (일반수요)	30,568	27,147	3,421	12.6
일반회계전입금	613,363	609,549	3,814	0.6
예탁금및예수금	-	-	-	-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977,726	970,491	7,235	0.7
일 반 회 계	행 정 운 영 경 비	0	0	0	0
	재 무 활 동	977,726	970,491	7,235	0.7
	소 방 특 별 회 계 일 반 전 출 금	977,726	970,491	7,235	0.7
	국 고 보 조 금 반 납	0	0	0	0
	정 책 사 업 비	0	0	0	0

2) 소방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024,637	1,009,650	14,987	1.5
행 정 운 영 경 비		788,116	788,116	-	-
재 무 활 동		38,556	18,685	19,871	106.3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36,600	16,900	19,700	116.6
국 고 보 조 금 반 납		1,956	1,785	171	9.6
정 책 사 업 비		196,202	201,144	△4,942	△2.5
예 비 비		1,763	1,705	58	3.4

3. 회계별 사업내역

가. 일반회계 : 해당 없음

나. 소방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47,792	32,805	14,987		
계속사업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5,025	4,745	280	잠실, 영등대교 노후 CCTV 등 영상 감시장비 구축 관련 총 500백만원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기 용도 변경된 280백만원 증액편성	P.305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 대비 감액)	471	6,112	△5,641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1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기간 소요로 공사 착공이 어려워 공사비(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5,641백만원을 감액편성	P.309
	재난현장 활동지원(소 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340	320	20	적법한 소방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으로 기 편성예산(20백만원)의 조기 소진됨에 따른 20백만원 증액편성	P.314
	수난구조대 운영	1,637	1,237	400	한강 사고대응 강화를 위한 노후 선박 교체 관련 설계비로 국비(소방안전교부세) 200백만원과 시비 200백만원 증액편성	P.319
	국고보조금 반환금	1,956	1,785	171	2023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증액편성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6,600	16,900	19,700	향후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정 수요로 인한 예탁금 증액편성	-
	예비비	1,763	1,705	58	지방재정법에 근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을 위해 예비비 증액편성	-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 없음.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된 9,777억 26백만원임.

2) 소방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1조 246억 37백만원임.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1조 246억 37백만원임.

- 금회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9,704억 91백만원 대비 0.7% 증액(72억 35백만원)된 9,777억 26백만원임.
- 소방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86억 2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52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8억 1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조 96억 50백만원 대비 1.5% 증액(149억 87백만원)된 1조 246억 37백만원이며,
- 세출은 순계예산¹⁾규모로 기정예산 1조 96억 50백만원 대비 1.5% 증액(149억 87백만원)된 1조 246억 37백만원임.

1)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소방특별회계」 개요

-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19.12.10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소방회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1.1.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서울시는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1.3.25)하여 운영 중임.
-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법 제141조에 따라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총액의 45퍼센트) 중 서울시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표] 소방특별회계 세입 구조 현황

구 분	내 용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목적(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소방안전교부세	-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퍼센트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함. - 전국 자치단체 재정상황, 특수소요 등을 고려하여 배분 되어지기 때문에 서울시로 배정되는 예산에는 매년 차이가 발생함. - 서울시로 배정된 예산의 75%는 소방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됨.
일반회계전입금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지원 예산
국고보조금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소방보조 인력양성 및 운영 등 9개 사업('24년 기준)에 보조
세외수입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등 자체수입

-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이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인건비로의 과도한 전입을 제한하기 위해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도 이상의 소방정책사업비 확보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²⁾).
- 또한, 「소방회계법」 제4조³⁾에 따라 소방특별회계 세출을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금회 2024년도 제1회 서울시 추경안의 소방특별회계 세출 편성구조를 살펴보면, 세출 규모가 총 1조 246억 37백만원으로 인건비 계정에 7,382억 92백만원, 정책사업비 계정에 2,863억 4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참조)

2) ※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3. (생략)

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4조(계정의 구분)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한다.

[표] 2024회계연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 세입 : 1,024,637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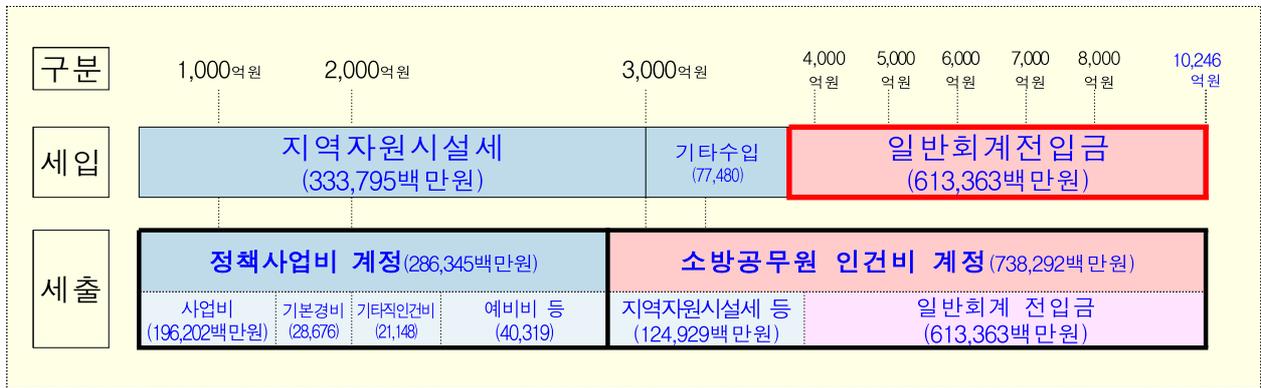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안전 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보전수입 등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333,795 (32.6%)	35,768 (3.5%)	613,363 (59.9%)	33,198 (3.2%)	2,474 (0.2%)	3,439 (0.3%)	2,600 (0.3%)

○ 세출(순계) : 1,024,6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인건비	정책사업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759,440 (74.1%)	196,202 (19.1%)	28,676 (2.8%)	38,556 (3.8%)	1,763 (0.2%)



나. 세입예산안(소방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조 96억 50백만원 대비 149억 87백만원(1.5%) 증액된 1조 246억 37백만원임.

[표] 세입예산(추경) : 1조 246억 37백만원 (149억 87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세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사유
계	1,024,637	1,009,650	14,987	
세 외 수 입	2,474	2,474	-	
보 조 금	3,439	3,439	-	
특 별 교 부 세	2,600	2,600	-	
소방안전교부세 (특 수 수 요)	5,200	-	5,200	소방선박(2억), 소방헬기(50억)
보 전 수 입 등	33,198	30,646	2,552	
잉 여 금	30,776	28,024	2,752	'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
전 년 도 이 월 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7	327	△200	'23년도 실 국고보조금 잔액 반영
용자금융원금수입	2,295	2,295	-	
내 부 거 래	977,726	970,491	7,235	
지역자원시설세	333,795	333,795	-	
소방안전교부세 (일 반 수 요)	30,568	27,147	3,421	'24년도 교부확정액 반영
일반회계전입금	613,363	609,549	3,814	
예탁금및예수금	-	-	-	

- 금회 세입예산 편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특수 수요가 필요한 별도 품목(소방헬기, 소방선박)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⁴⁾가 '23. 12. 29 일 확정통보됨에 따라 노후 소방헬기(1호기)와 소방선박(서

4)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 행정안전부는 일반수요 외 대규모 재난에 대응을 위해 특수 수요가 필요한 별도 품목(소방헬기, 대규모 재난 대응 장비 구입 등)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서울시로 확정통보('23. 12. 29) 된 지원 대상은 소방헬기(1호기)와 소방선박(서울 702호)임.

을702호) 교체 예산으로 금회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또한, '보전수입등'에서 25억 5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⁵⁾이 기정추계예산 280억 24백만원 대비 27억 52백만원 증액(307억 76백만원)되었고, '전년도이월금'이 기정예산 3억 27백만원 대비 2억원 감액(1억 27백만원)에 따른 것임.

-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24년 예산편성 시 결산잉여금을 378억 4백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23년도 결산 결과 실제로는 316억 29백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차년도 이월액이 추계금액인 67억 58백만원보다 크게 줄어든 7억 26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잔액이 추계금액인 3억 27백만원보다 2억원이 줄어들면서 이를 뺀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추계금액(280억 24백만원)보다 27억 52백만원이 늘어난 307억 76백만원이 된 것으로 파악됨.

5) '2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결산잉여금	계(①+②)	기정예산①	제1회 추경②	비고
30,776	30,776	28,024	2,752	

구분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A-C	이월액(C)	국고보조금 집행잔액(D)	순세계잉여금(E)=A-B-C-D
2023(예정)	980,059	942,255	37,804	6,758	327	28,024
2023(확정)	986,169	954,540	31,629	726	127	30,776
증감액	6,110	12,285	△6,175	△6,032	△200	2,752

- 이처럼 차년도 이월액을 당초 추계금액보다 크게 줄임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며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주된 재원이 집행잔액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보전수입등의 ‘전년도이월금’에서는 2023년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실 집행잔액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 추계편성액 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음.
- ‘내부거래’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일반수요)⁶⁾가 당초 편성액 대비 확정통보액이 34억 2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이 38억 14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72억 35백만원이 증액됨.
- 여기서, 일반회계전입금의 증액(38억 14백만원) 사유는 소방경 근속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12억 3백만원, 연가보상비⁷⁾ 9억 59백만원 등 당초 인건비계정 본예산 편성액보다 초과 발

6) 소방안전교부세(일반수요) :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와 달리 지자체에서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교부세

7) 연가보상비 사용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급일		소요금액
	소방령 이상	소방경 이하	
2022년	13일 이내	17일 이내	7,453,876
2023년	20일 이내	20일 이내	8,412,540
증감	7일 ↑	3일 ↑	958,664 ↑

생한 38억 14백만원을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 향후 인력운영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조사와 예측을 통해 예산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23년도 결산결과 전체적으로 342억원이 결손되었음에도 금회 감액 조치를 하지 않고 당초 전망액 3,337억 95백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서울시가 금년도 부동산 공시가격⁸⁾ 인상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소방안전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다. 세출예산안(소방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조 96억 5천만원 대비 149억 87백만원(1.5%) 증액된 1조 246억 37백만원으로,

8) 2024년 전국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공시가격은 평균 3.25% 상승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가 1월 1일 기준 전국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조사 후 가격을 공시

[표] 세출예산(추경) : 1조 246억 37백만원 (149억 87백만 원 증액)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추경사유
계	1,024,637	1,009,650	14,987	
행정운영경비	788,116	788,116	-	
인건비	759,440	759,440	-	
기본경비	28,676	28,676	-	
재무활동	1,956	1,785	171	2023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납부
정책사업비	196,202	201,144	△4,942	회계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개 사업의 감액 및 노후 한강CCTV 교체 등 3개 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편성액 조정
예비비	1,763	1,705	58	회계연도 중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해 예비비의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6,600	16,900	19,700	대규모 투자수요를 총당하기 위해 결산잉여금 예탁

○ 예산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의 변경은 없으며,

- ‘재무활동’에서 2023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납부를 위한 1억 71백만원을 증액하고,
- ‘정책사업비’에서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잠실, 영동대교 노후 CCTV 등 영상감시장비 구축), 수난구조대 운영(노후 선박

교체), 재난현장 활동지원(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과 관련된 총 3개 사업에 7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에서 56억 41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49억 4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예비비’는 소방특별회계 세출 편성 후 잉여 예산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5천 8백만원을 증액한 17억 63백만원으로 확대 편성하였고,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재정 수요(아래 [표]참조)를 고려하여 소방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탁하려는 것으로,
- ‘23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총 66억 중 일부(56억 37백만원)와 ‘2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 등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던 사업 중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5억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9억 21백만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 50억원 등 총 84억 21백만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금으로 대체됨에 따른 자체 재원(84억 21백만원)과 금회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 감액분 56억 41백만원의 합계에 해당함.

[표] 대규모 투자 사업 현황('24년~'28년 소방정책 소요사업비) (단위:백만원)

연 번	구분	총 사업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1,152,080	196,202	228,875	283,888	228,445	214,670
1	소방합동청사 건립	129,187	1,050	23,748	77,891	26,498	-
2	실화재훈련장 건립 (국고지원 14억 제외)	10,824	471	4,747	5,606	-	-
3	거여안전센터 이전	12,248	5,459	3,837	2,952	-	-
4	가락안전센터 이전	2,238	1,962	276	-	-	-
5	소방헬기(1호기)교체	30,000	12,500	12,500	5,000	-	-
6	선박(702호)교체	8,000	400	3,800	3,800	-	-
7	소방차량 교체 보강 (내용연수 교체)	77,240	12,577	9,803	11,920	20,240	22,700
8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교체)	55,440	5,095	9,245	11,456	11,982	17,662
9	경상사업비 (연2.7% 증가 반영)	826,903	156,688	160,919	165,263	169,725	174,308

1)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별 설명서 p.305)

- 동 사업은 수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자살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한강교량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해 한강투신 예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기정 예산 47억 45백만원 대비 2억 8천만원(5.9%) 증액한 50억 2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한강안전시스템 사업 개요

○ 한강교량 현황 : 27개(보행가능 교량 20, 철교 4, 자동차 전용 3)										
○ 한강교량 CCTV영상 감시·관제 출동시스템 설치 현황 (14개 교량)										
총 계	CCTV					비상벨 (비상방송)	경광등			
	소 계	고정형	회전형	열화상	어 안					
1,171	811	447	212	56	96	148	212			
설치연도	설치교량	설치예산 (백만원)	CCTV 카메라					비상벨 방송	경광등	교 체
			계	고정형	회전형	열화상	어안			
2012년	마포대교	1,210	65	49	16	-	-	16	16	'19.11.
2012년	서강대교		52	36	16	-	-	16	16	
2015년	한강·한남대교	855	136	64	32	8	32	32	32	'22. 9.
2016년	반포·동작대교	1,197	136	64	32	8	32	32	32	'23. 8.
'16~17년	광진대교	480	32	22	10	-	-	10	10	'22. 5.
'16~17년	천호대교		30	20	10	-	-	10	10	
2017년	잠실·영동대교	1,474	136	64	32	8	32	32	32	'24.(예정)
2022년	양화·원효·동호대교	2,417	168	96	48	24	-	-	48	
2023년	가양대교	1,498	56	32	16	8	-	-	16	
○ 2024년 한강교량 CCTV영상관제시스템 구축 및 노후 장비 교체										
- 추진기간 : 2024. 2월 ~ 2024. 12월 완공예정										
- 신규 구축(5개 교량) : 43억 17백만원										
구 분	성수대교	행주대교	구리암사대교	올림픽대교	월드컵대교					
예산액	9억 60백만원	7억 57백만원	7억원	9억 50백만원	9억 50백만원					
비 고	소방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교부세	재난안전교부세	재난안전교부세					
- 노후 교체(2개 교량) : 잠실·영동대교(5억원)										
* 소방특별회계 2억 2천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8천만원(2024년 추경)										
○ CCTV 미설치 교량 : 성산대교										
- 본교 바닥판 성능개선공사('21.1. ~ '27.10.)로 '28년 이후 설치 가능										
* 설치제외 교량(7개) : 철교(한강, 당산, 마곡, 잠실), 자동차 전용(방화, 청담, 강동)										

- 증액편성 사유는 '23년도에 시민건강국이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8천 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코로나 19 조기 종식으로 불용되어 반납하려던 것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잠실, 영동대교 노후 CCTV 등 영상감시 교체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⁹⁾을 받아 냄에 따른 것으로,
- 타실국에 편성되었던 정부 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및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납 처리 대신에 소방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것 인바 향후 이러한 사례를 횡단전개하여 정부 교부금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별 설명서 p.309)

- 동 사업은 서울소방학교 부지 내에 서울 도심의 환경과 최근 화재양상을 반영하여 특성화된 실화재 훈련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61억 12백만원 대비 56억 41백만원 (△92.3%)을 감액한 4억 7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감액편성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 '24년 10월부터 공사착공을 예측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 「'23년도 4분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안내(재난안전정책과-9014호, 2023. 11. 27.)」

구 분	사업명	교부액(잔액)	용도변경 사유	변경 사업명	사업 내용	변경액	검토결과
서울 본청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라인 설치	280백 만 원 (280백만원)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소 조기 폐쇄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22. 4. 11.)	잠실 영동대교 노후 CCTV 등 영상감시장비 교체	고정용 CCTV : 64대, 산업용 광허브 44대, 광허브 어댑터 44대	280백 만원	용도변경승인

[표]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소방학교 내(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 사업기간 : (변경전) '24. 01월 ~ '25. 10월 ⇒ (변경후) '24. 01월 ~ '26. 05월
⇒ 변경사유 : 대원 안전과 직결된 훈련시설 보강 및 회복공간 증설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기간을 반영하여 사업일정이 7개월 증가되었음
- 소요예산 : 123억원(소방특별회계 109.3억원, 국고보조 13.7억원)
- 규 모 : 지상3/ 지하1층, 연면적 2,171.1㎡, 부지면적 1,514㎡
- 공간구성 : 2개 동(5개 훈련장, 훈련상황센터) 및 훈련 부속시설
- 추진일정

구 분	설계공모	⇒	실시설계	⇒	공사시공	⇒	공사완공
변경전	'24. 1. ~ '24. 3.	⇒	'24. 4. ~ '24. 9. (6개월)	⇒	'24. 10. ~ '25. 9. (12개월)	⇒	'25. 10.
변경후			'24. 5. ~ '25. 2. (10개월)		'25. 3. ~ '26. 4. (14개월)		'26. 5.

※ 실화재 훈련장 세부 공간구성

구분	훈련장(5종)	훈련상황센터	훈련 부속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세부 내역	화재성상, 화재진압, 백드래프트, 지휘전술, 복합전술	상황실, 강의실, 세척실	샤워실, 탈의실, 회복실, 목재연료저장소, 폐목처리저장소	정화시설(집진 및 배연설비), 물재이용 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 「2023년 제19차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공23-041)」¹⁰⁾ 결과 소방대원의 휴게실 및 외부 휴게공간 확보, 옥상녹화 공간 조성 등의 계획을 조건부로 의결되었고, 이를 반영한 「실화재 훈련장 건립추진 변경계획(교육훈련과-1860)」¹¹⁾을 수립함에 따라,

- 당초 계획된 6개월('24. 4월 ~ '25. 9월)의 설계용역기간(기본 설계, 실시설계)이 10개월('24. 5월 ~ '25. 2월)로 늘어났고, 이

10) 「2023년 제19차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공23-041), 2023.12.27」 조건부 의결

- 휴게실 및 외부 휴게공간 확보, 주변 환경 고려한 옥상녹화 계획을 반영한 설계 및 공사비 산정 시 착공 시점의 물가상승률 및 철거비 반영 예산편성 필요함.

11) 「실화재 훈련장 건립추진 변경계획(교육훈련과-1860), 2024.5.27.」

- 대원 안전과 직결된 훈련시설·설비 보강, 회복공간 증설(비상탈출구, 긴급배기설비 등 안전설비 강화, 열피로 회복실 확대)
- 설계·시공기간 조정, 공사 계약기간 확보로 훈련설비 안정화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기간 반영(설계 12개월, 발주입찰 및 계약 3개월, 공사 13.5개월)

로 인해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중 설계공모 및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건축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56억 41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를 이용한 훈련시설로서 대원들이 화염과 연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 소방대원의 휴게실 및 외부 휴게 공간 확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신규 사업의 설계시에는 설계에 앞서 필요한 요소들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3) 재난현장 활동지원 (사업별 설명서 p.314)

- 동 사업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시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처리제도¹²⁾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3억 2천만원 대비 2천만원(6.25%) 증액한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증액사유는 '24년도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배상금(2천만원) 중 현재까지 1천 6백만원을 집행하고 4백만원의 잔액만 남은 상황으로, 차량 강제처분으로 인한 고액의 손실보상금(19백

12)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만원) 청구¹³⁾건과 관련하여 기 지급한 기납부한 7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천 2백만원을 마저 지급하려는 것임.

[표] 2024년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지급 내역(24. 5. 31. 기준)

지급건수(건)	본 예산(천원)	지급총액(천원)	지급잔액(천원)	미지급액(천원)
15	20,000	15,588	4,411	12,140

- 이는 소방활동 손실보상 지급부족액과 연내 지급예상분을 반영한 조치로 적절하다 하겠으며, 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심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적법한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운영제도의 안정적인 지원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4) 수난구조대 운영 (사업별 설명서 p.319)

- 동 사업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과 구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공사와 구조선박 등 구조장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수난구조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2억 37백만원 대비 4억원(32.33%) 증액한 16억 3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13) '23. 1. 17.(화) 19:11경 발생한 성북구 종암동 소재 다세대주택 화재(대응1단계 발령) 시 지휘차가 2층 창문 난간에 매달려 있는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된 아우디(A6) 차량을 파손됨. 이와 관련하여 제30차 손실보상심의회 개최 결과 19,140천원의 손실보상금 의결

[표] 노후소방선박(서울 702호) 교체 사업 개요

- 교체선박 : 서울 702호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년)
- 사업규모 : 50톤급 소방정 1척 건조
- 교체 대상 개요

서울 702호	톤 수	엔진	건조금액	진수일
	24톤 (승선 21명)	디젤 680HP×2기 (선질 : 강선)	899,250천원	1998.10.23. (25년 경과)

- 기존 소방선박(서울702호) 건조 후 25년 경과로 성능저하(내용연수 20년)

엔진 성능	소방펌프 능력	크레인 인양 능력
30% 저하 (17kts → 12kts)	30% 저하 (180m³/h → 130m³/h)	20% 저하 (0.5톤 → 0.4톤)

- 사업비 : 8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40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8,000	400	3,800	3,800
시비	4,000	200	1,900	1,900
국비(소방안전교부세)	4,000	200	1,900	1,900

* '24년 설계비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2억원) 교부로, '24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에 미편성된 자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2억) 확보 후 사업 추진

- 업무추진 일정

공유재산 심의관리 계획 및 소방선박 T/F 구성 및 운영 2024. 2~4.	⇒	예산 확보 (추 경 : 2억) 및 설계용역 2024. 6~12.	⇒	외부전문가 자문 회의 및 구매규 격서 검토회의 2024.12.	⇒	계약 추진, 업 체 선정 및 중 간검사(1차) 2025.	⇒	완성검사 후 납품 및 운 용 2026.
---	---	--	---	---	---	--	---	--------------------------------

- 여기서, 증액 편성한 4억원은 노후 소방선박(서울702호) 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23년 12월이 되어서야 서울시에 통보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4. 1월에 노후 소방선박 교체 보강 추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금년도 투자본 4억원(소방안전교부세 2억원, 시비 2억원)에 해당함.

- 교체하려는 노후 소방선박 서울702호는 '98년도에 도입된 선박으로, 선박설비 노후 및 부품 단종에 따라 수리가 어렵고 운항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수난사고 대응에 부적합한 실정인 바,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소방선박 교체를 위한 총 사업비 80억원(시비 4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40억원)이 2026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전성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갖춘 소방선박을 건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